

12.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

●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 관한법률

[일부개정 2005.1.5 법률 7331호]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(개정 1971.12.28, 1990.12.31)

제2조 (국세) 국가는 소득세 · 법인세 · 상속세 · 증여세 · 종합부동산세 · 재평가세 · 부당이득세 · 부가가치세 · 특별소비세 · 주세 · 인지세 · 증권거래세 · 관세 · 임시수입부가세 · 교육세 ·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. (개정 1981.12.5, 1989.12.30, 1990.12.31, 1993.12.31, 1994.3.24, 1998.12.28, 2000.12.29, 2005.1.5)
[전문개정 1976.12.22]

제3조 (지방세)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인 취득세 · 등록세 · 면허세 · 주민세 · 재산세 · 자동차세 · 주행세 · 농업소득세 · 담배소비세 · 도축세 및 레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· 공동시설세 · 사업소세 · 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. (개정 1984.12.24, 1988.12.26, 1989.6.16, 1991.12.14, 1993.12.31, 1999.12.28, 2000.12.29, 2001.12.29, 2005.1.5)
[전문개정 1976.12.22]

제4조 (중복과세의 금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. (개정

1971.12.28)

제5조 (국세의 지방양여) ①삭제 (2004.1.16)
②삭제 (2004.12.30)
[본조신설 1990.12.31]

부칙 〈제780호, 1961.12.2〉

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토지세법, 유흥음식세법, 자동차세법, 광세법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 농지세, 유흥음식세, 자동차세,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.
③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호별세와 동력세는 폐지하고 지방세중특별행위세, 어업세 및 교통세는 국세에 통합한다.
④이법 시행전의 토지세, 유흥음식세, 자동차세, 광세, 마권세, 호별세, 동력세, 특별행위세, 어업세 및 교통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.

부칙 〈제1211호, 1962.12.8〉

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제2161호, 1970.1.1〉

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제2327호, 1971.12.28〉

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제2614호, 1973.3.14〉

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전화세에 관하여는 전화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〈제2921호, 1976.12.22〉

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 에관한임시조치법) 〈제2932호, 1976.12.22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**제12조** 생략

부칙(교육세법) 〈제3459호, 1981. 12.5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단서 생략)

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중 “임시수입부가세”를 “임시수입부가세 · 방위세 · 증권거래세 · 교육세”로 한다.

제3조 및 **제4조** 생략

부칙(지방세법) 〈제3757호, 1984. 12.24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도축세 및 마권세”를 “도축세 · 마권세 및 담배판매세”로 한다.

제4조 내지 **제12조** 생략

부칙(지방세법) 〈제4028호, 1988. 12.26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자동차세 · 농지세 · 도축세 · 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”를 “토지와 다보유세 · 자동차세 · 농지세 · 담배소비세 · 도축세 및 마권세와”로 한다.

② 및 ③생략

제3조 내지 **제7조** 생략

부칙(지방세법) 〈제4128호, 1989. 6.16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토지와다보유세”를 “종합토지세”로 한다.

②내지 ⑦생략
제4조 및 제5조 생략

부칙(토지초과이득세법) 〈제4177호, 1989.12.30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

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법인세”를 “법인세·토지초과이득세”로 한다.

부칙 〈제4278호, 1990.12.31〉

①(시행일)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에 납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지방세법) 〈제4415호, 1991. 12.14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”를 “공동시설세·사업소세 및 지역개발

세”로 한다.

부칙 〈제4444호, 1991.12.21〉

①(시행일)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에 납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부칙 〈제4671호, 1993.12.31〉

①(시행일)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에 납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부칙(농어촌특별세법) 〈제4743호, 1994. 3.24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7조 생략
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

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교육세 및 교통세”를 “교육세·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”로 한다.

③내지 ⑦생략

부칙(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) 〈제 5071호, 1995.12.29〉

①(시행일)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률의 개정)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국가는 제2조에 규정된 교육세의 수입중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교육세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.

③생략

부칙 〈제5173호, 1996.12.12〉

①(시행일)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납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부칙(토지초과이득세법) 〈제5586호, 1998.12.28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일반적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

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법인세·토지초과이득세”를 “법인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③생략

부칙 〈제6052호, 1999.12.28〉

①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주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특례)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100분의 95로 한다.

③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5호중 “주세”를 각각 “주세양여채원”으로 한다.

부칙 〈제6300호, 2000.12.29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전화세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경과조치) 2001년 9월 1일전까지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.

제3조 (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) ①교통세의 지방양여 비율은 제5조

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01년 교통세 수입의 1,000분의 24로 하며, 교통세가 폐지되는 때의 지방재원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·결정한다.

②교통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은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세의 1,000분의 976으로 한다.

③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양여금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항제1호중 “교통세양여 재원전액”을 “전화세양여 재원전액·교통세양여재원전액”으로 한다.
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중 “교통세 전액”을 “교통세의 1,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교통세전입액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·제1항 및 제2항중 “교통세”를 각각 “교통세전입액”으로 한다.

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로정비사업 : 교통세양여재원

전액과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 및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

2. 농어촌지역개발사업 :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

3. 수질오염방지사업 :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

4. 청소년육성사업 : 주세양여재원의 1,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

부칙(지방세법) 〈제6549호, 2001. 12.29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경주·마권세”를 “레저세”로 한다.

②생략

부칙(국가균형발전특별법) 〈제7061호, 2004.1.16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4년 4월 1일

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〈생략〉…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및 ②생략
③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.

④내지 ⑨생략

부칙(지방양여금법) 〈제7125호, 2004. 1.29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칙(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) 〈제7253호, 2004.12.30〉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

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 〈제7331호, 2005.1.5〉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